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77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김정재·김성원·박덕흠

윤한홍 • 고동진 • 김승수

정점식 · 김소희 · 이인선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 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10만원 이 하의 소액을 대출하여 주고 수천 %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피 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 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5항 삭제).

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금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 ④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u><</u> 삭 제>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